



기관·시설의 기표소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시설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안내


기관·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별도 안내 (해당 기관·시설의 장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기표소 운영 일시 및 장소 등)

거소투표


거소투표 시 유의사항

-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거소투표하는 사람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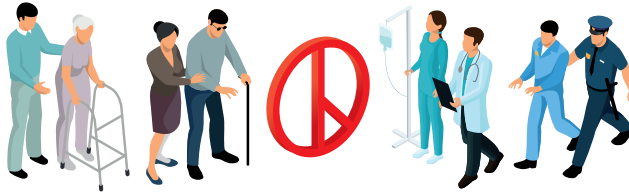
거소투표 관련 위반 시 처벌규정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7조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8조



거소투표제도 안내

거소투표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

2024. 3. 19. ~ 3. 23. (5일간)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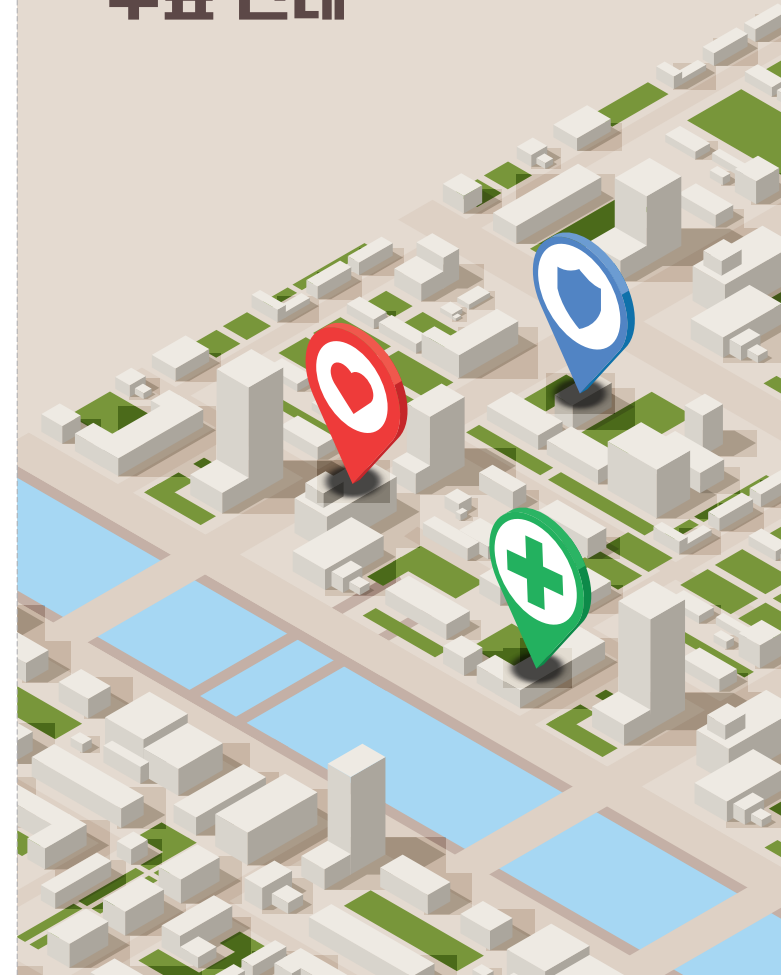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3월 23일(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오후 6시 까지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거소투표 절차



2024년 4월 10일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안내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안내도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이렇게 합니다.

1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확인

기관·시설 기표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수령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기



2 기표 및 투표함 투입

▪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기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사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사전투표

2024. 4. 5. ~ 4. 6.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투표

2024. 4. 10.
(오전 6시 ~ 오후 6시)

*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 방문